

제 2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定款)변경 보고

2019. 2. 28.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定款)변경 보고

의 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28일
제출자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1. 제안사유

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개선 통보(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2493호, '18.03.02.) 개정에 따른 정관 일부 개정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나.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에 따른 정관 개정

※ 관련근거 : 공기업담당관-2493호(2018.03.02.)

다. 재단의 이사회 감사 2명 중 1명은 당연직으로 임명

3. 주요내용

가. 제9조(임원의 임면) : 감사 2명 중 1명은 당연직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근로자 투표를 거쳐 추천된 근로자 이사후보자 포함)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	제9조(임원의 임면) ①~④ (현행과 같음)

<p>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7)</p> <p>②시장은 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p> <p>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개정 2015.5.11, 2015.9.9)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개정 2012.12.7, 2015.5.11, 2016.7.21) <p>④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p>⑤ 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⑤ <u>감사 2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00.00.)</u></p>
--	---

나.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인원 변경

- (현행)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 (개정)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인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인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3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p>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계 인사 2. 경영전문인 3. 공인회계사 4.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인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인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u>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추천인은 위원 추천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00.00)</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u>2명(개정 2019.00.00)</u>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u>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신설 2019.00.00)</u> <p>②~⑦ (현행과 같음)</p>

<p>5.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p> <p>③법인의 임직원, 서울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p> <p>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p> <p>⑥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⑦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p>	
---	--

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삭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인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0. 기타 다른 법률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제한된 자 <p>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p>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u>1. 삭제 (개정 2019.00.00.)</u></p> <p>2.~10.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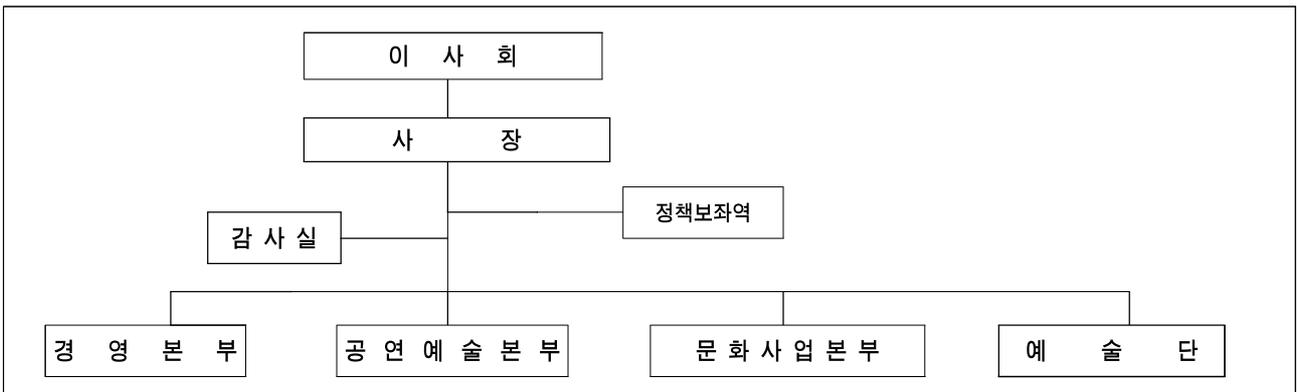
<p>때에는 당연 퇴직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	--

라. 제22조(조직 및 정원) : 회관의 조직과 정원을 명시(별표1, 별표2)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조직 및 정원)①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②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22조(조직 및 정원)① 법인의 <u>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u>,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00.00)</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신설 2019.00.00.)

기 구 표



〈별표 2〉 (신설 2019.00.00.)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사장	사무처	예술단
정원	651	1	106	544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개선 통보(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2493호, '18.03.0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이사회 의결 예정

붙임 : 1. 제안근거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안) 1부 끝.

※ 작성자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책기획팀장 김영환 (☎399-1510)

붙임 # 1

제안근거_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제6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안근거_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3. 생략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11. 생략

제39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안근거_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개선 통보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2493호, '18.03.02.)

bananaksy/강선영/정책기획팀/2019-02-21 15:02 이 문서는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I·SEOUL·U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송부

1. 공기업담당관-949(2018.1.22.)호, -2113(2018.2.20.)호와 관련입니다.
 2.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을 보내드리오니, **2018년 상반기중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가. 작성기준
 - 상위법, 행안부 운영지침 및 정관표준안 등 우선 적용하여 개정
 - 기관별 현 정관 내용중 필수사항 등 기재
 - 나. 주요골자
 - 출연기관 정관에 정원 명시토록 규정 (투자기관 기 포함, 출연기관 대부분 미 포함)
 - 출연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삭제 (일부 기관 상위법에 따라 운영)
 - ※ 외국인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사 문의(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 700-6205)
 -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토록 명확화
 -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생략 가능 근거 명시
- 다. 협조사항 : 2018. 6. 30.한 정비결과 제출**
- 반드시 시 주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공사공단팀/출자출연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
 - ※ 기관의 설립 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달리 정할 수 있음.
- 붙임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 및 개정서식. 끝.

bananaksy/강선영/정책기획팀/2019-02-21 15:02 이 문서는 보안문서로서 외부 반출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투자, 출자·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전문관 **차미영** 공기업총괄팀장 **차미영** 공기업담당관 **03/02**
임출빈

협조자 주무관 **전인성**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시행 공기업담당관-2493 (2018.03.02.) 접수 정책기획팀-318 (2018.03.06.)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72 /전송 2133-0864 / y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

신 · 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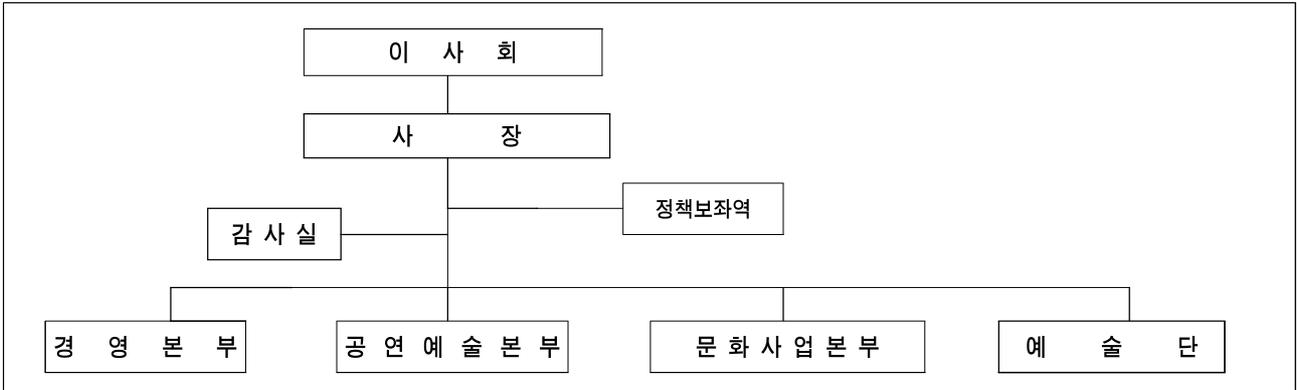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9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근로자 투표를 거쳐 추천된 근로자 이사회 후보자 포함)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이 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7)</p> <p>②시장은 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p> <p>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개정 2015.5.11, 2015.9.9)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개정 2012.12.7, 2015.5.11, 2016.7.21) <p>④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p>⑤ 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9조(임원의 임면) ①~④ (현행과 같음)</p> <p><u>⑤ 감사 2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00.00.)</u></p>	<p>감사 2명 중 중 1명을 당연직으로 함</p>
<p>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p> <p>①법인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인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3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p>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p> <p>①법인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인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u>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추천인은 위원 추천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00.00)</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u>2명(개정 2019.00.00)</u>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p>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변경</p>

<p>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계 인사 2. 경영전문인 3. 공인회계사 4.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p>③법인의 임직원, 서울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p> <p>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p> <p>⑥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⑦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p>	<p><u>3.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신설 2019.00.00)</u></p> <p>②~⑦ (현행과 같음)</p>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u>1. 삭제 (개정 2019.00.00)</u></p> <p>2.~10. (현행과 같음)</p>	<p>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조항 삭제</p>

<p>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p> <p>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p> <p>7. 법인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p> <p>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9.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p> <p>10. 기타 다른 법률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제한된 자</p> <p>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조직 및 정원)①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②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22조(조직 및 정원)① 법인의 <u>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u>,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00.00)</p> <p>② (현행과 같음)</p>	<p>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별표 신설</p>

〈별표 1〉 (신설 2019.00.00.)

기 구 표



〈별표 2〉 (신설 2019.00.00.)

정 원 표

(단위 : 명)

구 분	계	사 장	사무처	예술단
정 원	651	1	106	54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안)

제정	1999. 6. 30
개정	1999. 12. 17
개정	2000. 4. 17
개정	2000. 8. 11
개정	2001. 3. 12
개정	2002. 1. 5
개정	2002. 11. 18
개정	2004. 12. 31
개정	2006. 3. 29
개정	2006. 8. 7
개정	2007. 4. 16
개정	2007. 9. 28
개정	2009. 3. 5
개정	2009. 11. 18
전면개정	2011. 10. 17
개정	2012. 12. 07
개정	2014. 4. 11
개정	2015. 5. 11
개정	2015. 9. 9
개정	2016. 7. 21
개정	2017. 1. 17
개정	2018. 1. 23
개정	2019. 00. 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시민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교육사업(신설 2007.4.16)
6.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행사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개정

2009.3.5, 2014.4.11)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법인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및 직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이하“사장”이라 한다) 1인
3. 이사15인 이내(이사장, 사장 및 근로자이사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7.1.17)
4.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근로자 투표를 거쳐 추천된 근로자 이사후보자 포함)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7)

②시장은 사장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개정 2015.5.11, 2015.9.9)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개정 2012.12.7, 2015.5.11, 2016.7.21)

④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감사 2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00.00)**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단, 임명권자는 연임의 경우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되, 상임임원인 사장의 경우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한다.

②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및 추천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17.1.17.)

[중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7.1.17.>]

③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1.17.>]

[중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7.1.17.>]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1.17.>]

⑤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신설 2017.1.17.)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인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인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추천인은 위원 추천 시 성별 균형**

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00.00)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개정 2019.00.00)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신설 2019.00.00)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문화예술계 인사
2. 경영전문인
3. 공인회계사
4.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법인의 임직원, 서울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 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7, 2015.5.11)

⑤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⑥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개정 2019.00.00)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7.)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17.)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인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7.1.17.)

9.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7.1.17.)

10. 기타 다른 법률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제한된 자 (신설 2017.1.17.)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법인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내부 규정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인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법인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법인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법인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법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① 법인의 조직은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00.00)

②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7.)

1.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11.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7.1.17.)

제25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제외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를 결정하기 전에 지도·감독 주관부서와 투자·출연기관 재정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서면결의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0조(설치)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 산 및 회 계

제32조(재산)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법인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기금) ①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개정 2012.12.07)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법인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법인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법인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5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손익금의 처리) ① 법인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법인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법인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4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999. 6.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 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법인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99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 설립 전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이 추진해온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인이 승계한다.

부 칙 (2000. 8.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3.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5)

제1조(시행일) 조례개정에 따른 “총감독”명칭의 “사장”으로의 변경시행은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감독명칭변경의 적용) 본 규정집에 있는 모든 “총감독”명칭은 “사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항은 조례 공포와 정관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2. 12. 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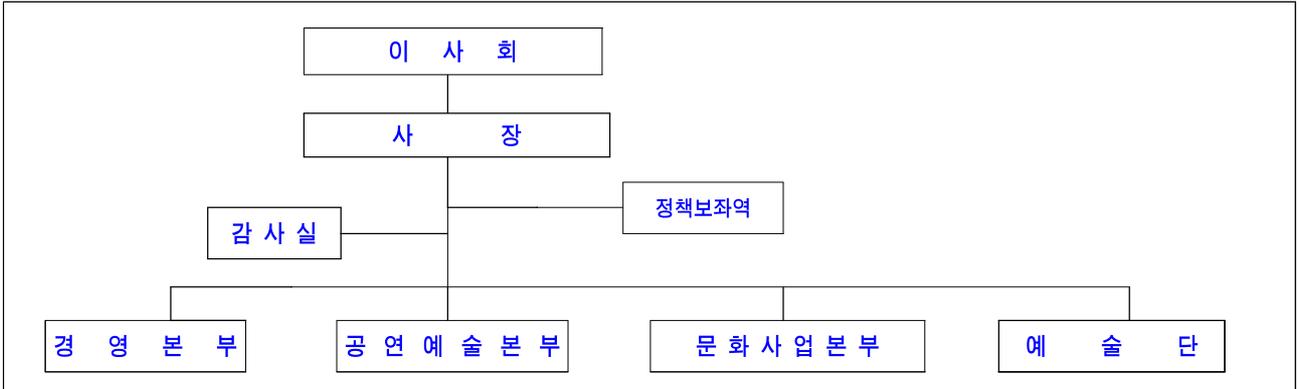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9.00.00.)

기 구 표



〈별표 2〉 (신설 2019.00.00.)

정 원 표

(단위 : 명)

구 분	계	사 장	사무처	예술단
정 원	651	1	106	544